

의안번호	2217553
의 퇴 인	전현희 의원
회 답 일	2026.6.8.
추 계 번 호	26B15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의 개발 · 보급 등)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알리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21조의2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 참여자 에 대한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3.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4. 그 밖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21조의2(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신설		

2. 상세 사유

- (안 제14조의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개발·보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적합한 표준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개발·보급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1조의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등¹⁾을 지원할 수 있도록

1)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시행 여부와 규모 및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²⁾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705억원³⁾이 편성되어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근로자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목적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기준 200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편성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 및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기존 사업의 확대 및 변경 여부와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발생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 개정안에 규정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신규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변경 및 시행 여부와 규모·내용 등을 검토하기 곤란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비용의 제공

3. 근로시간 및 업무 방식의 합리적 조정

4. 그 밖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고용관리지원 사업(코드: 1452-306)의 내역사업

3) 2,705억원 내에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금 이외에 사업운영비 및 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음

4) 코드: 1453-305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이후부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2026년 예산 기준 62억원, 시비 100%)을 통해 참여자 및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부담 4대 보험료등을 지원하고 있음⁵⁾

※ (경기도) 경기도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2026년 기준 126억원, 도비 100%)을 통해 참여자와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⁶⁾

-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III.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5) 자료: 서울특별시

6) 자료: 경기도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은 서울 소재의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장애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직무 및 근무처 발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

구 분	권리중심 일자리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기간	• '20년 7월 ~ '23년 • 연단위 사업으로, 매년 보조사업자 신규 선정	• '24년~ 계속 • 연단위 사업으로, 매년 보조사업자 신규 선정
일자리 수	• 400개	• 388개
근로조건	• 시간제 200개(주20시간) • 복지형 200개(주15시간) ※ 최저임금 적용	• 특화일자리 유형 280개(주20시간) • 문화예술일자리 유형 108개(주20시간) ※ 최저임금 적용
사업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최종증 우선 참여 보장	•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중증 우선 참여 우대 * 단, 문화예술일자리는 최종증 장애인만 참여가능
소요예산	• 5,803백만원('23년 기준)	• 6,171백만원('26년 기준)
지원사항	• 참여자 및 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 4대보험료, 기타운영비	
직 무	• 온라인콘텐츠, 편의시설 모니터링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문화예술 등 * 3개년('20~'22년) 권리중심 일자리 직무 현황 실태조사 결과 ('23.3월 시행) : 시위·캠페인 50.4% > 전시·토론회 17.2% > 모니터링 15.4% 順	• 단순 사무보조부터 IT·바이오 등 민간고용 시장 변화를 반영한 직무까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제공 • 민간 연계 취업으로 실질적 자립을 도모 하는 방향으로 직무 개편 * '24년 이후 최소 56명 민간 연계 취업완료
근 무 처	• 보조사업자 기관 내 자체 배치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다양화 • 도서관·보건소·민간기업 등으로 근무처 확대 * 자체 배치 금지
예산과목	• 사회복지사업보조	• 사회복지사업보조
수행기관	• 25개소 ※ 기관당 전담인력 1명 지원	• 23개소 - 특화유형 14개소, 문화예술유형 9개소 ※ 기관당 전담인력 1~2명 지원

[참고자료 2]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

(경기도 제출자료)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정도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장애당사자의 지역사회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일자리 사업과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구성됨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란?

구 분	내 용
사업규모	• 기관 당 참여자 10명
지원내용	• 보조금: 참여자 규모에 따라 인건비 지원 – 인건비(참여자·전담인력 보수 및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
사업내용	• 심한 정도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특화직무 활동 • 직무 수행을 위한 참여자 고용 • 지역사회 연계 직무 활동 수행
직 무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 문화예술활동 • 장애인인식개선활동
전담인력	• 참여자 10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참여가능 장애인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 무 처	• 지속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공간 확보 • 지역 내 시설, 공간 등 인프라 활용 가능